

1. 개정이유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,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이 개정(법률 제21317호, ‘26.1.27. 공포, ‘26.2.28. 시행)됨에 따라, 수당 등의 지급, 사고조사관증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수당 등의 지급(안 제8조)

법 개정으로 필요시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대상을 기존 위원장·위원·자문위원 및 관계인에서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까지 확대하도록 함.

나. 사고조사관증(별지서식)

사고조사의 수행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사고조사관증의 발급 부처를 국무조정실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·위원·자문위원”을 “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·위원, 자문위원”으로 한다.

별지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앞쪽 중 “국토교통부”를 각각 “국무조정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수당 등의 지급)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<u>위원회에 출석하</u> <u>는 위원장 · 위원 · 자문위원</u>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	제8조(수당 등의 지급) ----- ----- <u>위원회 및 전문위</u> <u>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·위원,</u> <u>자문위원</u>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